

의안 번호	244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6. 30.(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6. 30.(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7. 14.(월)

2. 제안설명 요지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가. 제안이유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목적과 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안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존속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비상설 운영조항 추가 및 상설운영 관련 조항 삭제(안 제1조~제3조)
 - 비상설화: 지역유산심의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어린이안전도시관리위원회
- 유사 기능 수행 위원회 통·폐합(안 제4조 ~ 제5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장애인 복지위원회’로 통폐합 운영
- 존속 필요성 없는 위원회 폐지(안 제6조 ~ 제7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위원회 설치 조문 삭제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위원회 효율적인 관리와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총 141개의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는 비상설 운영 조항 추가 및 상설 운영 관련 조항 삭제, 유사 기능 수행 위원회 2개는 통·폐합 운영, 존속 필요성 없는 위원회 2개 폐지 등이며,
-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어 일괄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사항

가. 수정이유

- 제4조 및 제5조 조문 제외(삭제)
 - 제4조(「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5조(「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개정안)	수 정 안
제4조(「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	<삭 제>

장애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한”을 “관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과 이행 보고서 및 자체평가
3.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
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삭 제〉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 2.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
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p><u>따른 심의 사항</u></p> <p>3. <u>위원장이 장애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③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⑤ 담당부서의 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조례 등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